인권운동사랑방 강좌
2003 년 2 월 17 일 (월) 오후 7 시
이성훈 leesh@paxromana.int.ch

1993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10 년의 평가와 전망
- *한국 인권운동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찰*

1. 들어가면서 - 왜 비엔나+10 ?

- ㅋ 한국인권운동에서 93 년의 의미
- ㅋ 문민정부 (92 - 97) – 국민정부 (98 - 02) –노무현정권 (03 – 07)
- ㅋ 세계화와 한국인권운동

2. 비엔나 회의 들여다보기 – 현재와 비교해서

1. 배경과 성격

2. 주요 쟁점과 성과

1. 인권의 원칙 재검토 –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2. 세계화와 상호연관성 – 인권, 민주주의, 발전, 평화...
3. 인권고등판무관실 설립
4. 국제(인권)형사재판소

3.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10 년 – 경향, 성과와 교훈

구조적 배경
1. 환경(생태)위기와 지속가능발전
2. 정보격차와 정보화사회
3. 유엔 민주화와 개혁
4. 신자유주의 세계화
5. 테러리즘과 반테러리즘

주요 국제인권 흐름과 경향

1. 인권과 발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의 후퇴
2. 인권과 평화: 테러리즘/반테러리즘과 국가안보
3. 인권과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확산
4.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국제인권제도의 국제적 확산과 발전
5.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유엔 내 인권의 주류화
6. 인권운동의 세계화

4.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한국 인권운동 과제
1. 신자유주의 세계화, IMF 와 인권운동의 세계화
2. "실천-이론-전략"의 부조화(불일치)
3. 인권운동의 리더쉽 – 비전, 의사소통, 전략, 투신
4. 인권운동과 시민운동/민중운동/정치운동
5. 인권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
6. '전방위' 인권운동론 – 전후좌우상하내외

참고: 인권운동의 7 대 딜레마 (이대훈, 민주법학 95 년)

1. 인권의 보편성과 적용의 특수성/상대성
2. 불가분성의 딜레마: 시민정치적 인권범주와 경제사회문화적 인권범주의 동등성과 불평등성
3. 인권운동과 경제의 분리
4. 인권네트워크운동의 확장과 범주상의 불일치
5. 안보와 공익성의 딜레마
6.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가주권의 딜레마
7. 개인적 인권과 집단적 인권의 딜레마

Seonghoon LEE (Anselmo)
leesh@paxromana.int.ch

Structure of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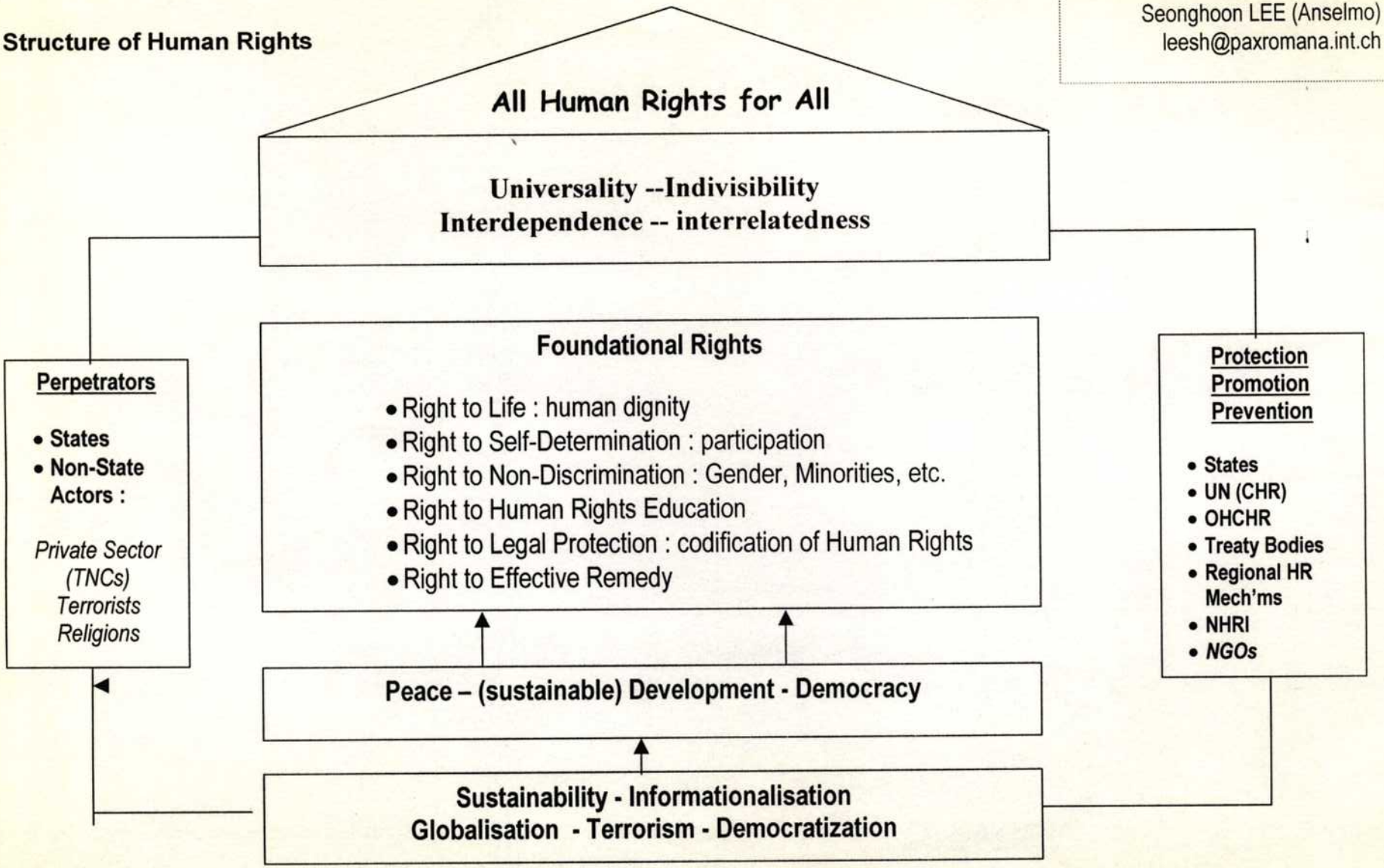

주요 국제인권 흐름과 경향

1. 인권과 발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의 후퇴

   ¬ 국제금융 및 무역 기구와 인권레짐의 충돌/모순 –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도전
   ¬ 국가의 약화와 비국가행위자 (초국적기업)의 책무성
   ¬ 발전권 실현의 구조적 제한 (외채 등)

2. 인권과 평화: 테러리즘/반테러리즘과 국가안보

   ¬ 평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 민족자결권 실현에 부정적 영향 (체첸, 티벳, 타밀, 아체, 나가랜드, ...)
   ¬ 국가내 무력갈등에 의한 인권 침해

3. 인권과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확산

   ¬ '민주주의'와 인권의 '충돌'
   ¬ 세계화와 지방화 : 민주주의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
   ¬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4.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국제인권제도의 국제적 확산과 발전

   ¬ 국가인권기구의 확대 – 인권교육
   ¬ 인권옹호자 Human Rights Defenders 선언과 특별보고관
   ¬ 인권침해구제절차의 발전 (고문 선택의정서, 경사문 의정성, 실종 선언문, 등)
   ¬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
   ¬ 이주노동자협약 발효 (03 년 2 월 10 일)
   ¬ 불처벌의 제도적 방지 (정신대, 피노체트, 르완다, 유고전범, 국제형사재판소)
   ¬ 원주민 운동의 발전 – 국가의 독립과 동화 사이의 투쟁
   ¬ 상호의존성의 강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강화 (식량, 주거권, 건강권)
   ¬ 소수집단의 권리 확대 (아동,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
   ¬ 사형제도 폐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5.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유엔 내 인권의 주류화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고문판무관실의 설립
   ¬ 유엔인권위의 정치화와 인권소위의 탈정치/약화 (국가결의안 채택 방지)
   ¬ 인권의 주류화 (코피아난 2002 년 유엔 총회 보고서)
   ¬ 인권의 희석화와 배제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 인종주의 – 끝나지 않은 의제

6. 인권운동의 세계화

   ¬ 인권운동의 전문화, 파편화, 종합화, 연대 및 상호연관성
   ¬ 이슈별 네트웍의 등장 (경사문,...)
   ¬ 종합적 인권네트웍 (민주주의 권리)
   ¬ 세계사회포럼 –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

Linkages home: http://www.iisd.ca
로마세계식량정상회의:http://www.fao.org
카이로세계인구발전회의:http://www.iisd.ca/linkages/cairo.html
코펜하겐세계사회발전정상회의:http://www.iisd.ca/linkages/wssd.html
더반세계회의: http://www.hri.ca/racism
하비타트인간주거회의:http://www.unhabitat.org/default.asp

테헤란선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6. 25

번역 : 김종서, 이계수, 김한균

제 1 부

전문 1

인권의 신장과 보호는 국제사회에 맡겨진 우선적 과제이며, 세계인권대회는 이들 권리의 보다 완전한 준수를 고양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인권체계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수행할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 2

모든 인권은 인간에 고유한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며, 인간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중심적 주체이고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실현에서 주요한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전문 3

1. 이들 권리와 자유가 「국제연합헌장」(the United Nations Charter)과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과 원칙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2.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비롯하여 「국제연합헌장」 제55조가 규정한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적절히 강조한 제56조에 포함된 공동행동 및 개별행동을 취한다는 서약을 재확인하며,

3. 「국제연합헌장」에 합치하도록 인종, 성별, 언어나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고 고무해야 할 각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문 4

「국제연합헌장」 전문 특히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 및 대소민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상기하면서,

전문 5

전화(戰禍)로부터 후손들을 구하고, 정의와 조약 기타 국제법의 법원에서 유래하는 의무들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확립하고, 보다 많은 자유와 함께 하는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며, 관용과 훌륭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촉진을 위한 국제적 장치를 채택하기로 한다는, 「국제연합헌장」 전문에 표현된 결정을 재차 상기하면서,

전문 6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들이 달성해야 할 보편적 기준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은 영감의 원천이며, 또한 이는 국제연합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인권법규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정립에서 성과를 거두는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전문 7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들과,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평등권과 민족자결의 원리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고무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연합헌장」에 체화되어 있는 원칙들, 평화, 민주주의, 정의, 평등, 법의 지배, 다원주의, 발전, 보다 나은 생활수준과 연대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모든 민족들의 열망을 고려하면서,

전문 7의 2

세계 도처에서 여성들이 계속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전문 8

인권분야에서 국제연합장치를 강화하고 국제인권기준들의 준수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국제연합의 활동들이 합리화되고 강화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전문 9

튀니지, 산 호세 및 방콕에서 있었던 3개 지역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들과 각 정부들의 공헌을 고려하며, 세계인권대회에 앞선 준비과정 동안에 독립된 전문가들이 마련한 연구들 뿐만 아니라 정부간 조직 및 비정부부문 조직들(NGOs)의 제안들에 유념하면서,

전문 10

원주민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보증하고 그 문화와 양식이 가진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국제사회의 헌신을 재확인한 1993년의 국제적 세계원주민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in 1993)를 환영하며,

전문 10의 2

국제사회가 모든 인권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현재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그에 대한 도전과 그로부터 전 세계에서 생겨나는 계속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들을 고안해 내야 한다는 점 역시 인정하면서,

전문 11

세계 각 민족과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보편적인 향유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들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전세계적인 과업에 다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 현실에 호소하면서,

전문 12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국제적 협력 및 연대의 노력에 의한 인권보장 노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헌신에 새 발을 내딛기로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엄숙히 채택한다.

제 2 부

1절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국제연합헌장」, 기타 인권관계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와 보호를 진전시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엄숙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본질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같은 틀안에서, 인권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은 국제연합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1절의 2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그들은 자결권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식민통치 또는 기타 형태의 외세 지배나 점령하에 놓여있는 민족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계인권대회는 불가양(不可讓)의 민족자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연합헌장」에 합치되는 모든 정당한 행동을 취할 각 민족의 권리를 인정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자결권의 부정을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자결권의 효과적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대한 1970년 선언」(the 1970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 따르면 이러한 자결권은, 평등권과 민족자결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 영토에 속한 모든 인민을 차별없이 대표하는 정부를 가진 주권독립국가의 영토의 완전성이나 정치적 통일을 총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행동을 정당화 또는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1절의 3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과 관련하여 인권기준의 이행을 보장하고 감시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수단이 취해져야 하며, 인권규범과 국제법, 특히 「1949년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the Genev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1949), 그리고 기타 적용가능한 인도적 법규범들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야 한다.

2절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는 마땅히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특히 국제협력의 목적에 비추어 국제연합의 우선적 목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같은 목적과 원칙의 틀안에서, 모든 인권의 신장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과 전문부서들은 국제적 인권법규들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그 활동의 통일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2절의 2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류의 천부적 권리이다. 따라서 그 보호와 신장은 정부의 일차적 책무이다.

3절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물론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하겠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를 떠나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4절

인권 신장과 보호의 절차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에 합치하여 행해져야 한다.

5절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강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체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표현되는 인민의 의사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인민의 완전한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는 보편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전세계에서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와 증진을 지원해야 한다.

5절의 3

세계인권대회는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를 포함하여 민주화와 경제개혁의 과정에 있는 최저개발국들이 민주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6절

1.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권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서 확립된 개발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의 불가결한 부분임을 재확인한다.

2. 「개발권에 관한 선언」에서 언명된 바와 같이, 인간 개인은 개발의 핵심주체이다.

3. 개발은 모든 인권의 향유를 조장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의 박탈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4. 각국은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의 장애 제거에 상호협력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개발권의 실현과 개발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5. 개발권의 실현을 향한 지속적인 진전은 국제적 수준에서 공정한 경제관계 및 합당한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국내적 수준에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필요로 한다.

6절의 2

개발권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개발 및 환경상의 필요를 공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유독·위해 물질 및 쓰레기의 불법적인 처리가 궁극적으로 모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유해·위험 제품 및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기존의 협정들을 채택하여 정력적으로 이행하고 불법 처리 방지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사람은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일정한 진보, 특히 생의학과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의 일정한 진보가 잠재적으로 개인의 완전성, 존엄과 인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편적 관심사가 되는 이 영역에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완전히 존중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한다.

6절의 3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사회가 자국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 나라의 외채부담 감경을 돕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7절

각국과 국제조직들은 비정부부문 조직과 협력하여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보장할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국가는 이들 권리의 향유에 대한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침해와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7절의 2

만연한 극빈상태의 존재가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즉각적 경감과 궁극적 제거는 마땅히 국제사회의 최우선과제로 남겨져야 한다.

8절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차별없는 존중은 국제인권법의 근본원리이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그와 관련된 불관용의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제거는 국제사회의 우선적 과제이다. 정부는 그들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체, 기관, 정부간 조직과 비정부부문 조직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이같은 해악에 맞서서 협력하고 그 활동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8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인종차별정책 철폐에서 이루어 낸 진전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와 국제연합이 이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평화적인 인종차별정책 철폐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계속해서 자행되는 폭력행위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8절의 3

테러리즘의 행위와 방법 및 관행의 모든 형태와 발로,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테러리즘과 마약거래의 연계는 인권, 기본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영토의 완전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정당하게 구성된 정부를 교란하는 활동이다.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의 방지 및 대적(對敵)을 위한 협력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절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의 불가양, 불가결, 불가분한 부분이다.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차별 근절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목표이다.

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성별에 기초한 폭력과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착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근절되어야만 한다. 이는 법적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개발, 교육, 모성보호, 보건, 사회부조와 같은 분야의 국내행위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여성의 인권은 모든 여성관련인권법규의 촉진을 포함한 국제연합 인권활동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정부, 기관, 정부간 조직 및 비정부부문 조직들에게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

10절

소수집단의 권리신장과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그러한 신장과 보호가 소수집단 거주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the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에 따라 소수집단이 차별없이 법앞에 완전히 평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각국의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소수집단은 간섭이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그들 고유의 문화를 누리고, 고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행하며,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1절

세계인권대회는 원주민의 고유한 존엄성과 사회의 발전 및 다원성에 대한 그들 특유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성과를 향유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강력하게 재확인한다. 각국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특히 원주민들에 관련된 문제에서 원주민들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원주민의 권리 신장과 보호의 중요성, 원주민 거주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대한 그러한 신장과 보호의 기여를 고려해 볼 때,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평등과 무차별에 기초하여 원주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일치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들 고유의 양식, 문화, 사회조직의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12절

세계인권대회는 많은 국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조기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세계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 속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면서, 1995년까지 협약을 전세계적으로 비준할 것과, 당사국들이 필요한 모든 입법적, 행정적, 기타 수단들을 동원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배정함으로써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서, 아동에 대한 무차별과 아동의 최대한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방어와 보호, 특히 여아, 기아(棄兒), 부랑아, 아동포르노, 아동매춘 또는 장기매매를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AIDS를 비롯한 질병으로 희생되는 아동, 난민아동, 수용아동, 무력분쟁속의 아동, 기근과 홍수 기타 재난에 희생된 아동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해 국내적, 국제적 장치와 계획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가 증진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국제연합의 범체계적인 인권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아동의 인격이 완전하고 조화롭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12절의 2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12절과 13절 사이의 삽입절

세계인권대회는 차별없이, 모두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권리뿐만 아니라 박해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비호(庇護)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인권선언」,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정」(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그것의 1967년 의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지속적으로 많은 난민을 자국내에 받아들여 대접해준 국가들과,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임무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근동지방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국제연합구호사업국(the Office of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에도 감사를 표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무력분쟁을 포함해서 난민을 발생시키는 많은 복잡한 요인들 속에서 심한 인권침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적인 난민위기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헌장」, 관련 국제법규와 국제적 연대에 따라 그리고 고통분담의 정신에서, 당사국들과 관계기관들의 조정·협력에서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의 요구를 염두에 둔 국제사회에 의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청됨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국제난민대회에 의해 채택된 해결책을 비롯해서 품위있고 안전한 자발적 본국송환이라는 우선적 해결책을 통한 영속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망명자와 난민 이동의 근본원인과 결과를 알리는 전략의 개발, 비상대책과 대응체계의 강화, 여성과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염두에 둔, 효과적인 보호와 원조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가 특히 원인제공 당사국의 책무를 강조한다.

포괄적 접근방식에 비추어, 세계인권대회는 정부간 조직과 인도적 조직에 의한 관심을 포함한 특별한 관심과, 자발적이고 안전한 본국송환과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국내 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영속적 해결책의 모색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연합헌장」과 인도적 법원칙에 따라, 모든 자연적 재해와 인재(人災)의 희생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13절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취약하게 되어 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 그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그리고 기존 인권법규의 강화와 더욱 효과적인 이행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각국은 국민들 중 취약부문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 보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교육, 보건, 사회부조 영역에서 충분한 조처를 창안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3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극빈과 사회적 배척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과, 극빈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극빈과 사회적 배척을 종식해서 사회발전의 성과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개발과 관련된 조치들을 포함해서 극빈과 그 원인에 대한 인식 증진을 달성하는 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각국은 필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극빈자들의 참여, 인권의 신장 그리고 극빈과 싸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14절

세계인권대회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인 인권법규의 법전화작업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며, 인권조약의 전세계적 비준을 촉구한다. 각국에게 이러한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과, 그 경우 가능한 한 유보를 두지 말 것을 장려한다.

15절

각국은 인권에 대한 불만이나 침해를 시정할 효과적인 구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법집행기관과 소추기관을 포함한 사법운영, 특히 국제인권법규들에 담겨 있는 합당한 기준들과 완전히 합치하는 독립된 사법부와 법률가는 인권의 완전하고 무차별적인 실현에 필수적이고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과정에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법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에 적절한 재원을 공급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향상된 수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운영의 달성을 위한 우선적 기초에 관한 자문제공 특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국제연합의 임무이다.

17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대량의 인권침해, 특히 망명자와 난민의 대량탈출을 가져온 대량학살, "인종청

소"와 전쟁시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에 대해 경악을 표한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런 범죄를 자행한 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그같은 관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재차 언급한다.

19절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인권법규와 인도적 법률 속에 담겨있는 기준들을 무시한 채 세계 전역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이 결여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해치는, 무력분쟁중의 인권침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대회는 각 국가와 모든 무력분쟁 관련정파들에게 국제협정에 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최저기준뿐만 아니라 「1949년 제네바협정」 기타 국제법적 규율과 원칙 속에 제시된 인도적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세계인권대회는 「1949년 제네바협정」과 기타 주요 인도적 국제법에 제시된 인도적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희생자의 권리를 재확인하며, 희생자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안전하게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19절 A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대량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상황이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악과 비난을 표명한다. 그러한 폭력과 장애에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처우와 처벌, 자의적인 즉결처형, 실종, 무단감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정책, 외세의 점령과 지배, 외국인혐오, 빈곤, 기아와 기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부인, 종교적 불관용, 테러리즘, 여성차별, 법의 지배의 실종이 포함된다.

19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에게 국제법과 「국제연합헌장」에 합치되지 않는 일방적 조치를 삼가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국가간 교역관계에 장애가 되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된 인권, 특히 식량, 의료, 주거와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해서 건강과 복지가 충족된 삶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식량이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해 둔다.

19절의 3

세계인권대회는 인권문제를 고려할 때 보편성, 객관성, 비선별성(非選別性) 보장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20절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기타 국제적 인권법규에 명문화된 것처럼, 국가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목표로 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주체의 구체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각국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한다. 교육은 국가와 모든 인종집단, 종교집단간의 이해, 관용, 평화, 우호관계를 증진해야 하며, 이들 목표를 추구하는 국제연합활동의 발전을 고무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과 적절한 이론적, 실천적 정보의 보급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없이 모든 개인에 관한 인권의 신장과 존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 교육정책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자원의 제약과 재도적 불비는 이러한 목표의 즉각적인 실현을 방해할 것임을 강조한다.

21절

우리는 지원을 구하는 국가들을 원조하고 각 개인이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국제연합체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국간 조직들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선거지원, 훈련을 통한 인권의식화, 교수와 교육, 대중참여와 시민사회를 뒷받침하는 국내 입법, 국내 제도와 관련 하부구조들의 확립·강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들에 할당되는 자원을 크게 증대시켜야 한다.

인권센타(the Centre for Human Rights) 아래서 이루어지는 자문제공과 기술적 협력계획들은 효율화, 투명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강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는 데 크게 공헌해야 한다. 각국은 국제연합 일반예산에서 나오는 할당분 증대를 장려함으로써 또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하여 이들 계획에 대한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

22절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연합활동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국제연합헌장」이 인권에 부여한 고도의 중요성과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은 국제연합인권활동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국제연합인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23절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해 국내 기구들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 특히 주무관청에 대한 조언능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인권에 대한 정보 보급과 인권교육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재확인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내 기구들의 지위에 관한 원칙들"(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을 고려하고 국내 차원에서 각국 특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각 국가의 권리임을 인정하면서, 국내 기구들을 수립하고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24절

지역기구들은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국제인권법규들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대회 진행중 이러한 기구들을 강화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시에 국제연합인권활동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이미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기구와 소지역기구들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차 언급한다.

25절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인권의 신장과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이 분

야의 교육, 훈련과 연구 활동, 그리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보호에 대한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공로에 감사한다. 기준설정의 일차적 책임은 각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세계인권대회는 이 과정에 대한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기여에도 역시 감사한다. 이 점에서 대회는 각국 정부와 비정부부문 조직들 사이의 계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권 분야에 중심으로 관계해 온 비정부부문 조직들과 그 회원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한 권리와 자유들을 향유해야 하며 국내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비정부부문 조직들은 국내법과 「세계인권선언」의 틀 내에서 간섭없이 그들의 인권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6절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관한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공평무사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매체(media)의 관여가 증대될 것을 장려하며 매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틀 내에서 자유와 보호가 보증되어야 한다.

원래 문건 PC/98의 "1과 2 사이의 삽입절"에 포함되어 있는 절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향한 국제연합체제의 노력은 국가들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안정과 복지에 기여하며,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개선된 조건들에도 기여한다.

제 3 부

I. 국제연합체제내의 인권에 관한 조정의 증대

1.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체제내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뒷받침할 조정을 증대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모든 국제연합기구들과 조직체들 및 전문부서들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관계된 국제연합 조직체들과 전문부서들의 고위공직자들이 연례회의에서 그 활동을 조정하는 외에 그 전략과 정책들이 모든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하게 할 것을 사무총장(the Secretary-General)에게 권고한다.

2. 나아가 세계인권대회는 지역조직과 저명한 국제적, 지역적 금융·개발기구들에게 역시 그 정책과 계획이 인권의 향유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2의 2.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체제의 관련 전문부서와 조직체 및 기구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여타 관계 정부간 조직들도 그 각각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권기준들을 정식화하고 촉진하며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 관장분야에서 세계인권대회의 결과를 고려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체제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것을 목표로 채택되었던 국제인권조약과 의정서들의 비준, 가맹 혹은 승계를 장려하고 촉진하는데 일치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사무총장은 조약기구들과 상담을 할 때 장애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이러한 인권조약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들과 대화창구를 열어 놓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4의 2.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국제인권법규에 대해 각각 설정하고 있는 모든 유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어떠한 유보이든지 유보는 가능한 한 엄격하고 좁게 설정할 것이며, 관련조약의 목표 및 목적과 모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어떤 유보이든지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해 볼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5. 세계인권대회는 수준높은 기존 국제기준들과 조화를 유지하고 인권법규들의 무분별한 증식을 회피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제연합총회결의 41/120에 포함된 새로운 국제법규들의 정교화와 관련된 지침들을 재확인하며, 국제연합인권조직체들은 새로운 국제기준들의 정교화를 고려할 때에는 새로운 기준들을 기초할 필요성에 관하여 인권조약기구와 상담할 것, 그리고 제안된 새로운 법규들에 대해 사무국(the Secretariat)이 기술적 심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7. 세계인권대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회원국의 요구로 정보를 보급하고 인권분야에서 훈련과 기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조직 지역사무소에 인권담당관을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과 관련된 작업에 배치된 국제 관리(官吏)를 위한 인권훈련이 조직되어야 한다.

8.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비상회의 소집을 적극적인 발의로서 환영하며, 국제연합체제의 관련기구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여타의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

자원

1.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센타의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기타 자원들 사이의 점증하는 불균형에 우려를 표하고 다른 중요한 국제연합계획들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유념하면서, 사무총장과 총회는 국제연합의 기존 및 장래의 일반예산 가운데에서 인권계획을 위한 자원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증대된 특별예산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러한 틀 내에서 일반예산의 증대된 부분이 직접 인권센타에 배분되어 그 비용과 국제연합인권조직체들과 관련된 비용 기타 인권센타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타의 기술적 협력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재정지원은 이러한 증가된 예산을 강화해야 하고, 세계인권대회는 기존의 신탁기금에 대한 아낌없는 출연을 촉구한다.

3. 세계인권대회는 사무총장과 총회에 대해 인권센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기타의 자원을 충분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정부간 조직들이 위임한 인권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재정적 자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증할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국제연합헌장」 제101조에 따라서 사무총장 그리고 회원국들이 증가한 임무에 소요되는 자원이 사무국에 할당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관된 접근방법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회원국들이 위임한 인권활동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계획예산주기(programme budget cycle)에서 절차조정이 필요하고 또 유용한지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인권센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인권센타는 인권에 대한 범조직적인 관심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센타의 핵심적 역할은 다른 국제연합조직체 및 기구들과 완전히 협력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에 의한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한 특별기구에서 인권요소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국제연합헌장」에 따라서 인권센타와 인권장치들의 보고, 경험과 능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인권센타의 조정역할은 뉴욕의 인권센타사무소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인권센타는 주제별 국가별 보고담당자, 전문가, 실무단과 조약기구의 체계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보장받아야 한다. 권고에 이어지는 후속부분은 인권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우선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

4. 인권센타는 인권의 신장에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역할은 회원국간의 협력과 자문제공, 기술지원에 대한 강화된 계획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기존의 자발적 기금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활동은 엄격하고 투명한 기획운영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계획과 기획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그러한 평가 행사의 결과와 기타의 관련 정보가 통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센타는 특히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이러한 기획, 계획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원국과 조직들에게 문호가 개방된 정보회합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제연합고등인권판무관(a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창설문제를 포함한 국제연합인권기구의 개작(改作)과 강화

1. 세계인권대회는 이 선언에 반영된, 모든 국민을 위한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틀 내에서 인권의 신장과 보호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요구에 국제연합인권기구들을 계속적으로 적응시킬 필요성을 인정한다. 특히 국제연합인권기구들은 조정,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해야 한다.

2. 세계인권대회는 총회가 제48차 회의에서 대회 보고서를 검토할 때 모든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고등인권판무관의 창설문제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 사안으로 하여 개최하기를 권고한다.

II. 평등, 존엄 그리고 관용

A.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기타 형태의 불관용

1. 세계인권대회는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특히 인종차별정책과 같이 제도적 형태로 나타나거나 인종적 우월성이나 배타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혹은 현존하는 인종차별의 형태와 발로의 제거를, 국제사회와 인권분야의 범세계적 신장계획들이 추구해야 할 일차적 목표로 간주한다. 국제연합기구들과 부서들은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싸움을 위한 제3차 10개년 계획(the Third Da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과 관련된 행동계획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표의 부수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사회가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싸움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위한 신탁기금(the Trust Fund for the Programme for the De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에 아낌없이 출연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 세계인권대회는 각국 정부에게 모든 형태와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 혹은 관련된 불관용을 방지하고 이와 투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벌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그러한 현상과 싸우기 위한 국내기구의 창설에 의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정책을 개발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3.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현재의 여러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특별보고담당자를 임명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정」(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의 모든 체약당사국들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선언을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호소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개인은 사상, 양심, 표현과 종교의 자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여, 각국 정부가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 종교유적의 모독을 포함하여 종교 혹은 신념에 근거한 불관용과 이와 관련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한 각각의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고려에 따라, 그 국제적 의무에 합치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종교와 신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의 규정들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5. 세계인권대회는 인종청소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관장하는 자는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며, 국제사회는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6.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인종청소 관행과 투쟁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종청소 관행에 조속히 종지부를 찍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인종청소 관행의 희생자들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B.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1.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규정된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센타가 관계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자문제공과 기술지원이라는 그 계획의 일부로서, 기존의 혹은 잠재적인 상황에서 관련된 소수집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의 예방 및 해결뿐만 아니라 소수집단 문제와 인권에 관한 유자격 전문가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 세계인권대회는 각국과 국제사회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따라서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3. 적절한 경우라면 취해야 할 조치들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과 그 나라의 경제적 진보와 개발에 대한 소수집단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B의 2. 원주민

1. 세계인권대회는 소수집단 차별 방지와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원주민 담당실무단(the Working Group on Indigenous Popula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이 제11차 회기에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을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2.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원주민에 관한 선언의 초안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주민담당실무단에 대한 위임의 갱신과 연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3.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자문제공과 기술지원계획이, 원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지원을 구하는 국가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세계인권대회는 이 문건에서 예견된 센타의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인권센타가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원주민들이 사회의 모든 측면들 특히 그들과 관련된 문제에 완전하고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

5. 세계인권대회는 총회가 1994년 1월을 기점으로, 원주민과 공동으로 결정되는 행동지향적인 계획들을 포함하는 세계원주민의 국제 10개년 계획(an International Decad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을 선포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자발적 신탁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 10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국제연합체제내에 원주민을 위한 상설적 포럼을 창설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B의 3. 이주노동자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보증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이주노동자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사회의 여타 부분 사이에 보다 큰 조화와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의 창출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정」(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을 조인, 비준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

C.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

1. 세계인권대회는 여성들이 모든 인권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각국정부와 국제연합의 우선과제임을 촉구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과정에서 그 수행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여성의 통합과 완전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의제 21의 제24장에서 개진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향한 여성을 위한 전세계적 행동에 관하여 확립된 목표들을 재차 언급한다.

2.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은 국제연합의 범체계적 활동의 본류(本流)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들 사안은 관계 국제연합기구와 기관에 의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지위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국제연합여성개발기금(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국제연합개발계획(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기타 국제연합부서들 사이에 협력을 증대시키고 그 목표와 목적을 더욱 통합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센타와 여성지위향상분과(the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3. 특히, 세계인권대회는 공적 사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희롱, 착취와 인신매매를 제거하며, 사법운영에서 성별에 근거한 편견을 제거하고, 일정한 전통적 관습적 관행, 문화적 편견 및 종교적 극단성의 해악적 효과들과 여성의 권리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근절하기 위한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총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the draft Declaration on the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각국이 그 규정들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는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근본원칙에 대한 침해이다. 특히 살인,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도와 강제임신을 포함한 이러한 종류의 모든 침해는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책을 요구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은폐된 것이든 공공연한 것이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을 촉구한다. 국제연합은 각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서기 2000년까지 보편적으로 비준한다는 목표를 장려한다. 협정에 대한 특히 많은 수의 유보들을 겨냥한 방법과 수단들이 장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는 협정 유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각국은 협정의 목표와 목적에 반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국제조약법과 모순되는 유보들을 철회해야 한다.

5. 조약감시기구들은 여성들이 인권과 무차별의 완전하고 평등한 향유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행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평등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들도 채택되어야 한다. 여성지위위원회(CSW)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에 대한 선택의정서의 준비를 통한 청원권의 도입가능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제50차 회기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담당자의 임명을 고려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6. 세계인권대회는 여성들이 그 일생동안 최고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968년 테헤란 선언」(the Tehran Proclamation of 1968)뿐만 아니라 세계여성대회(the World Conference on Women)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정」의 맥락 속에서, 세계인권대회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손쉽고 적절한 보건과 아주 광범위한 가족계획서비스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재확인한다.

7. 조약감시기구들은 특정 성별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그 심의와 조사결과들 속에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약감시기구들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에서 여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지위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제49차 회기에 인권분야의 보고담당자와 실무단 역시 그렇게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결의(결의 1993/46)를 채택한 것을 만족스럽게 새겨두고 있다. 또한 여성지위향상분과도 다른 국제연합조직체들 특히 국제연합인권센타와 협력하여, 국제연합의 인권활동이 일반적으로 특정 성별과 관련된 폐습을 포함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겨냥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제연합 인권 및 인도주의적 구제인단이 여성에 특유한 인권폐습을 인식하고 취급하며 성별에 근거한 편견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이 장려되어야 한다.

8. 세계인권대회는 정부와 지역조직 및 국제조직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위를 향한 여성의 접근과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 사무국이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여성간부회원을 임명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

을 장려하며, 국제연합의 다른 주요기구와 부속기관들이 평등한 조건 하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증하는 것을 장려한다.

9. 세계인권대회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될 세계여성대회를 환영하며, 평등, 개발과 평화라는 대회의 주요 주제들에 따라서 여성의 인권이 그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촉구한다.

D의 2. 아동의 권리

1. 세계인권대회는 "아동을 위한 최초의 요구"(the First Call for Children)의 원칙들을 재차 언급하며, 이 점에서 주요한 국내적 및 국제적 노력들 특히 생존, 보호, 개발과 참여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아동기금(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의 노력을 강조한다.

2. 1995년까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의 보편적 비준, 「세계정상선언 및 행동계획」(the World Summit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의 보편적 조인과 그것의 효과적 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설정하고 있는, 그 목표와 목적에 반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국제조약법에 반하는 유보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민족이 국제적 협력의 뒷받침을 받아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정상행동계획」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을 국내행동계획 속에 통합시키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국내행동계획과 국제적 노력을 통하여 유아사망률과 산모사망률을 낮추고 영양실조와 문맹률을 낮추며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특별히 우선점이 두어져야 한다. 자연재해와 무력분쟁으로부터 생겨나는 황폐한 비상사태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각한 극빈 속의 아동문제와 싸우기 위한 국내행동계획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고안되어야 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국제적 협력의 뒷받침을 받아 특히 어려운 상황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아동착취와 학대의 근본원인을 논의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와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 여유아살해, 유해 아동노동, 아동인신매매와 장기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그밖의 형태의 성적 학대에 맞선 효과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

5.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과 그 전문부서들이 여아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신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들을 지지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여아를 차별하고 그에 대한 해악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과 법령, 관습과 관행을 철폐하고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6. 세계인권대회는 사무총장이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연구를 발의한다는 제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전쟁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적인 규범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에는 모든 전쟁무기, 특히 대인지뢰의 무차별적 사용으로부터의 아동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쟁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의 사후조리와 사회복귀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대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군대 최소징집연령을 올리는 문제를 연구할 것을 촉구한다.

7. 세계인권대회는 관계된 모든 국제연합체제 기구들과 장치들, 그리고 그들의 위임에 따른 전문부서의 감독기구들이 아동의 인권과 상황에 관련된 사안들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8.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인권법규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의 효과적인 수행에서 비정부부문 조직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9. 세계인권대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인권센타의 보조를 받아서 특히 유례없는 정도의 협정 비준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각국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고려하여, 그 임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권고한다.

D.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세계인권대회는 많은 회원국들이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처우나 형벌 반대 협정」(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비준한 것을 환영하며, 다른 회원국들도 모두 조속히 협정을 비준할 것을 장려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장 극악한 침해의 하나가 고문행위이며, 그 결과 존엄성이 파괴되고 피해자는 그 생활과 활동을 계속해 나갈 능력을 손상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법과 인도주의법에 따르면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소요나 무력분쟁시기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고문관행에 즉각 종지부를 찍고 세계인권선언 기타 관련 협정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악을 영원히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특별보고담당자가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각국이 완전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처우나 형벌로부터 수형자 및 미결수를 보호하는 데 보건담당자 특히 의사가 하는 역할과 관련된 의료윤리의 원칙들"(the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그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고문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재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틀 내에서 취해지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공급, 무엇보다도 고문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the Voluntary Fund for the Victims of Torture)에 대한 추가적 출연에 의한 자원공급에 우선점이 두어져야 한다.

국가는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을 면책해 주는 입법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소추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법의 지배에 굳건한 초석을 제공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고문을 근절하려는 노력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방에 집중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며, 따라서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라는 예방체계를 확립할 의도로 마련된, 협정의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강제실종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한 선언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각국이 강제실종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종지부를 찍으며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 행정, 사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강제실종이 각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토에

서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언제나 이를 조사하고, 그 주장이 확인되면 그 범행자를 소추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각국의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E. 장애인의 권리

1.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고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장애인은 어디에나 있다. 장애인들은 육체적이건, 재정적이건, 사회적이건 혹은 심리적인 것이든,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모든 장애물의 제거를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3. 총회가 제37차 회기에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을 상기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화에 관한 표준규칙」 초안(the draft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1993년 회합에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III. 협력, 개발과 인권 강화

1. 세계인권대회는 민주주의, 개발과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행동에 우선점이 두어져야 함을 권고한다.

2. 인권과 관련된 제도의 강화와 건설,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의 강화와 취약집단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 정부의 요구로, 선거의 인권적 측면과 선거에 관한 공공정보의 지원을 포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은 특히 중요하다. 법의 지배의 강화, 표현의 자유와 사법운영의 촉진,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인민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3.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센타에 의한 강화된 자문제공과 기술지원 활동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센타는 각국의 요구가 있으면, 각국이 인권조약에 따른 보고서 준비뿐만 아니라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행동계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준비를 포함한 특정 인권문제에 관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과 민주적 제도의 강화, 인권의 법적 보호, 관련종사자들의 훈련,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폭넓은 교육과 공공정보는 이들 계획의 구성요소로서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전면적 준수와 법의 지배의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국내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과제를 지고 있는 국가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이 국제연합 내에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러한 계획은 인권센타에 의하여 조정되어 이해관계있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형사교정설비의 개혁, 변호사, 판사와 인권관계 안전요원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법의 지배의 원활한 기능과 관련된 기타 모든 활동에 대한 국내기획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계획은 각국이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안강령의 확립, 구조, 작동양식과 재원조달을 위한 대안이 포함된 의안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6.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에 대하여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하는 국내행동계획을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한다.

7.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권에 관한 선언」에서 확립된 보편적인 불가양의 개발권이 이행되고 실현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개발권에 관한 주제별 실무단(a thematic Working Group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을 임명한 것을 환영하고, 그 실무단은 국제연합체제의 다른 기구나 부서들과 상담하고 협력하여 「개발권에 관한 선언」의 이행 및 실현에 대한, 그리고 각국의 개발권 실현을 위한 방법과 수단 권고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정식화하여 이를 국제연합총회가 빠른 시일안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8. 세계인권대회는 개발 그리고(혹은) 인권에 적극적인 비정부부문 조직 기타 풀뿌리조직들이 개발권과 관련된 논의, 활동과 그 이행에서, 그리고 개발협력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각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에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권고한다.

9.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기능하는 법체계를 건설하는 것과 이러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국내 제도에 충당되는 자원을 크게 증대시킬 것을 각국 정부, 주무관청과 기구들에게 호소한다. 개발협력 분야의 행위자들은 개발, 민주주의와 인권 사이의 상호관계를 상호 강화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법의 지배와 민주적 제도의 강화와 관련된 전문가를 갖춘, 정보 및 인력 자원은행을 포함한 포괄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다.

10.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와 협력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대한 선택의정서의 검토를 계속할 것을 장려한다.

11.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센타의 자문제공과 기술지원 계획 하에서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기구들을 강화하거나 수립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각국은, 국제인권법규들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기준들에 따라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기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된 지역 및 소지역 워크샵, 세미나와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원을 요구할 것을 장려한다.

12. 세계인권대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기타 관련 법규들에 규정된 노동조합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신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그 관련 전문부서들이 취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에게 이 점에 관하여 국제법규들에 규정된 그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IV. 인권교육

1.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 훈련과 공공정보가 공동체들 사이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신장과 성취, 상호이해와 관용 및 평화의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2. 각 국가는 문맹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교육의 방향을 인간개성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에 맞추어야 한다.

3. 국제인권법규와 지역인권법규들에 규정된 것처럼,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여를 강

화할 것을 목표로 한 공통된 이해와 자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 민주주의, 개발과 사회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1993년 3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국제의회(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가 채택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the World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과 기타 인권법규들을 고려하여, 각국이 매우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공공정보 보급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의 인권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과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5. 각국 정부는 정부간 조직, 국내 제도 및 비정부부문 조직들의 지원을 받아 인권과 상호 관용에 대한 자각이 증대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이 수행하는 「세계공공정보캠페인」(the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국 정부는 인권교육을 주도하고 지지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 공공정보의 효과적인 보급을 떠맡아야 한다. 국제연합체제의 자문제공과 기술지원계획은 인권분야의 교육과 훈련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규들과 인도주의법에 규정된 기준들과, 이들 기준을 군대, 법집행담당관, 경찰과 보건직 등의 특수집단에게 적용하는 데 관한 특별교육에 대한 각국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이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인권교육 10개년의 선포가 고려되어야 한다.

V. 이행 및 감시 방법

1. 세계인권대회는 각국 정부가 국제인권법규들에 규정된 기준들을 국내 입법에 구체화시키고 인권의 신장과 보장에서 역할을 담당할 국내적 사회구조, 제도와 기관들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자국의 국내기구를 수립하거나 강화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의 지원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활동과 계획의 강화를 권고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또한 지역적 조직이나 국제연합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내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내기구의 대표자들이, 인권센타의 후원을 받아 그 운용을 개선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회합을 소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조약기구, 조약기구 의장회의와 당사국회의에 대하여, 국가별 보고서 준비를 하는 데 대한 각 인권협정 소정의 중복되는 보고요구들과 지침들을 조정하기 위한 계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각국이 지는 조약상의 의무에 관한 하나의 전체적 보고서의 제출이 이러한 절차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그 영향을 증대시킬 것인지를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인권법규들의 당사국,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양한 기구들, 장치와 절차들의 명령과 임무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중첩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인권조약기구와 다양한 주제별 장치 및 절차들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이들을 보다 잘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5. 세계인권대회는, 이 점에 관하여 이루어진 수많은 제안들 특히 조약기구 자체와 조약기구 의장단이 내놓은 제안들을 고려하여, 감시임무를 포함한 조약기구의 작동 개선에 관하여 계속 작업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취한 포괄적인 국내적 접근법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

6.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조약의 당사국들이, 이용가능한 모든 선택적 의사소통절차를 받아들이도록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6의 2.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침해범의 면책문제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소수집단 차별 방지와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가 기울인 노력들을 지지한다.

7.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기존의 인권법규들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하며, 국제법위원회(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을 장려한다.

8. 세계인권대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1949년 제네바협정」과 그 의정서를 승인하고 그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한다.

9. 세계인권대회는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사회의 개인, 집단과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초안(the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Rs and FFs)의 조속한 완성과 채택을 권고한다.

10.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보고담당자, 대표자, 전문가 및 실무단과 소수집단 차별 방지와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체계를 유지, 강화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 각국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절차와 장치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그들의 작업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각국에게 이러한 절차들 및 장치들과 완전히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11.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연합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무력분쟁의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증함으로써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을 것을 권고한다.

1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실현에서 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指標)체계와 같은 추가적 접근법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승인을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보증하기 위한 일치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

VI. 세계인권대회 후속조치

1. 세계인권대회는 총회, 인권위원회 기타 인권과 관련된 국제연합체제 내의 기구들과 부서들이 국제연합 인권 10개년(a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의 선포를 포함하여 이 대회의 최종문건에 포함된 권고들을 지체없이 완전히 이행할 방법과 수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나아가 인권위원회가 매년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2.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에서 각국, 인권과 관련된 국제연합체제의 모든 기구들과 부서들이 이 대회 최종문건의 이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관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 제53차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것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마찬가지로 비정부부문 조직들뿐만 아니라 지역인권기구와,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국내인권기구들도 이 대회 최종문건의 이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체제의 틀 내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과 의정서의 보편적 비준이라는 목표를 향한 진전을 평가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이 대 훈
천주교 인권위원회

1. 세계인권대회 개최 배경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를 제외하고 최근의 국제질서가 얼마나 급격히 변동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근 2-3년간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변화양상은 이전의 반세기의 변화에 버금간다는 관찰도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제정치는 이론상으로나 실천상으로나 과거에 제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둘러싸고 만족할 만한 답을 못 내리고 있다. 잘 짜여진 냉전시기에 비해서는 확연히 무정부적인 일종의 혼돈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95년 시한이 종료되는 핵확산금지협정(NPT)의 틀속에서 일부 강대국의 핵독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노력이나 쿠르드족,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등 난민 대이동과 점차 증가하는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노동력 이동 등 새로운 인구이동현상, 그리고 우르과이라운드협정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무역원리와 지역별 블록화경제논리가 갖게 되는 모순은 이러한 탈냉전 세계질서의 혼돈 혹은 무정부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현상들이다.

두 이념진영의 갈등과 대결이 원리가 되었던 냉전시대가 마감되자 그 이후의 과도기적 무질서,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전망은 당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무엇을 뜻하는가는 사실상 국제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의 제1안건이 되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1991년 리우환경회의가 유엔의 주관하에 개최된 것이며, 또 지난해 6월 세계인권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그리고 1995년에 있을 「사회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인구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카이로), 여성과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북경)도 성공여부와는 별도로 '무언가 새로운 계약'을 찾기 위한 시도들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유엔의 기구개편이나 유엔사무총장이 대변하는 유엔의 집행력 강화론, 그리고 유엔안보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조직의 민주화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평화운동측에서도 1995년 NPT이후의 새 핵확산금지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권운동측에서도 이미 확정된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제뿐만 아니라 보스니아의 전범들이나 과거 일본 전범들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인권재판소의 신설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종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국제적 역할(유엔 안보리 가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냉전이후의 세계질서를 구상하는 하나의 세계회의로서 준비되었다. 드러난 모든 문제를 인권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국제질서의 최소한의 인본주의적 원칙과 개선책을 정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주최자인 유엔은 여전히 국력에 의존한 힘의 외교에 좌우되고 있고 국가 이외 범주의 조직들(이른바 비정부단체들)은 공동으로 무언가를 추진할 경험과 체계가 부족했다.

2.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본회의 경과[1]

가. 초기의 문제들

종종 이번 세계인권대회와 비교되는 리우 환경회의가 지구를 보호하자는 세계회의였다면 이번 회의는 인간을 보호하자는 세계회의였다. 그리고 이 두 세계회의의 주제도 그러하거니와 앞으로 1995년까지 열릴 3가지의 세계회의(여성, 인구, 경제개발전략) 모두 신국제질서와 개발문제를 연결시키는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비엔나세계인권대회도 대회주제가 "인권-민주주의-개발"로 정해졌다. 비엔나 인권대회는, 178개국의 참여와 114명의 국가수반이 참여한 리우환경회의의 화려함에 비해서 각국의 장관급 주무관리 혹은 특사들의 참석만으로 조촐하게 시작해서 조촐하게 끝났다고도 할 수 있다. 비록 650여 민간단체가 참여한 리우회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2천여 개의 인권단체가 비엔나회의에 참석했지만 비엔나회의는 언론의 무시를 감수해야 했다. 인권이 포괄하는 범위로 볼 때 마땅히 크게 주목되었어야 할 인권대회는, 2년여에 걸친 준비회의(PrepCom)에서 나타난 각국간 의견충돌과 이해상충으로 인해 처음부터 어렵게 출발했다. 준비회의는 인권증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일보다 인권의 보편성이나 불가분성, 민간단체의 참여수준 등 형식과 개념에 대해 논쟁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마지막 준비회의(4차)는 완전한 실패, 즉 안건과 선언문 기초내용의 합의에 실패했는데, 이로 인해 민간단체들의 참여수준과 범위에 대해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까지 대단한 혼란이 있었다. 준비회의의 무성과,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영향력 봉쇄노력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비엔나회의가 결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가 리우 환경회의와 다른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심판대에 오른 것이 국가(정부) 자체라는 사실이었다. "인권침해의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서의 국가" — 이 문제를 국가들의 회의기구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이번 인권대회를 매우 어렵게 만든 핵심 이유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란이 된 다른 주제들, 이를테면 민간단체의 참여범위, 지구 남북간의 경제격차와 정책실현능력상의 차이, 유엔의 민주화문제, 국제규범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등은 사실 모든 국제회의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비엔나대회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정치적 성격, 즉 인권침해의 책임소재와 회의의 주체가 모순되게도 동일하다는 데에 있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이 애매했던 리우 환경회의가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의 수준으로 설정된데 반해 비엔나 인권대회의 격이 낮게 잡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상 인권문제는 외교적 조정의 문제로 처음부터 설정된 것이다. 이 점은 인권에 대한 세계 각국정부의 평균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다. 인권문제는 환경문제와 달리 언제나 정치적인 문제였고 정부의 책임이 거론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한 주제이기도 했으나, 유엔을 구성하는 각국 정부는 이를 피하기도 어려웠지만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는 더우기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인권대회의 중심행사인 정부간 회의 즉 본회의는 이런 딜레마의 늪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 세계질서와 인권의 주제속에서의 국가'의 문제는 반드시 국가의 반명제로서 '민간(시민)사회'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

소극적이고 꺼려하는 정부들을 국제인권회의의 자리로 끌어내린 장본인들은 사실 일부 논자들이 국제시민사회라고 일컫는 민간인권운동단체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인권전문가집단이었

1) 「2장· … 본회의 경과. 가. 나. 다」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에 실은 필자의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기타 민간단체회의와 문화행사에 관해서는 동 자료집과 박래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다녀와서」, 『정세연구』, 93년 8월호 참조.

다. 리우 환경회의에서도 650여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역할은 높이 평가되었다. 매우 어려웠던 이번 회의를 성사시키는데 수천개의 인권단체들이 노력한 바는 사실 유엔 자체의 노력보다 값지다고도 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지역회의(비엔나회의의 준비회의의 일환)에서 종합적이고 진보적인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을 시종일관 주도했으며 지역회의의 정부간회의에 참석해 무능력한 정부대표들을 압도했고, 성사 자체가 의심되던 이번 인권대회가 가능하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적극성을 보였던 배경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인권침해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엔나회의 전에 회람된 여러 문서에 나타난 공통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이른바 국제시민사회가 발전시켜 온 인권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해는 일국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정부대표들과는 질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인권단체들은 ;

-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유엔의 조기경보 체계의 필요성
-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비상조치를 가능케 하는 정부들의 의지와 협조의 필요성
- 유엔의 평화보장활동에 인권보호조치를 필히 포함시키는 것
- 여성, 아동, 원주민에 대한 권리보장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
- 각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
- 유엔의 인권활동 확대발전을 위한 여건(재정, 권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 등에 대해 인권단체들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

대부분 준비없이 참여한 정부들이 진행한 본회의는 사실 이렇게 미리 주어진 문제의식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정치적 협상을 전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나. 주요 논란과 진행경과

본회의는 각 정부가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 그럴듯한 입장을 밝히는 지리한 전체회의(Plenary)와 논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본위원회(Main Committee), 그리고 최종 선언문을 기초하는 문안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중에서 아래에 요약된 논란과 실질적인 협상 및 갈등이 일어난 회의는 가장 중요했던 문안기초위원회였다.

<민간단체 참여의 범위>

본회의 이전부터 초기까지의 쟁점은 단연 민간단체의 참여허용 범위에 관해서였다. 유엔의 회의절차에 관한 논의에서는, 참여하려는 민간단체들이 너무 많고 산만하며 유엔의 운영상 정부대표에게 절대 우선권이 있다는 논지로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본회의 전에 개최된 민간단체 회의(NGO Forum)에서 유엔의 규칙과는 무관하게 필요한 경우 각국의 구체적 인권침해사실을 언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또 정부간 회의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에 대한 실무적 배려가 축소되고 티벳의 독립운동 지도자 달라이 라마 초청건이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취소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압력이 본회의 시작 이전부터 가시화되었고, 또 문안기초위원회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아예 배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본회의는 초기부터 형식·절차문제와 주변적인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단적인 예로 선언문 초안중에서 합의가 안된 200개 이상의 문안중에서 단 하나만이 첫날 하루종일의 토론에서 합의되었다.

<인권의 보편성 논쟁>

민간단체의 참여문제는 "달라이 라마 초청을 허용하되, 나라별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언급 불가, 전체회의시 민간단체에 최대한 발언기회 부여, 그러나 문안기초위원회에서 단 1회의 한해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한다"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되었다. 그후, 본회의의 두번째 싸움은 서방과 아시아 일부 국가간의 인권의 보편성 및 불가분성 논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인권법분야의 이 해묵은 논쟁이 비엔나회의의 발목을 잡은 사실에서, 인권문제가 각국 정부의 구체적인 관심에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간 외교전술로 사용된다는 인상이 강하게 풍겼다. 보편성 논쟁은 본회의 시작 3일째 미국이 중국등 일부 아시아국가(북한 포함)를 겨냥해서 "일부 극소수 국가들"이 비엔나선언의 문안기초 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부터 이 방해작업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극화되었다. 또 상당수의 서방 언론은 중국이 비엔나회의가 성과없이 끝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일종의 사보타지선전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은 상당수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인권의 보편성 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견을 달리한다고 응수했다.

여기서 중국이 강조한 '인권규정의 적용방식'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보편적 인권규정이라도 각국의 국법(국가의 주권 규정)에 의거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권우선의 원칙을 의미한다. 주권문제는 비서방국가들의 관심사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서방의 많은 나라들도 소수인종과 원주민들이 주장하는 자결권에 대해 기존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국가간 협력에서는 항상 주권의 일부를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권과 국제질서는 본질상 배타적인 관계만은 아니다. 강조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회의의 이러한 초기 갈등은, 인권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서방의 국가들과 기존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인권문제를 내정의 문제로 국한하려는 일부 비서방국가들의 정치적 갈등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나라들과 주도권이 아예 없는 나라들 사이의 싸움이었다.

<이슬람국가들의 공동전선>

인권이 블록외교전술로 이용되는 사례는 이슬람권과 서방의 줄다리기에서도 나타났다. 이슬람국가들은 보스니아사태에 대한 서방의 체계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분개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첫째, 유엔이 합의한 '일국의 구체적 상황 언급 불가' 원칙을 지키더라도 보스니아사태는 단순한 일국상황이 아니라 심대한 국제적 인권침해상황이기 때문에 비엔나회의에서 심각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둘째, 걸프전과 다르게 비기독교측이 주로 희생당하는 보스니아사태의 경우 서방측이 이를 덮어두려는 의심이 제기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감을 배경으로 이슬람국가들은 이슬람협의기구(IOC: 회원국 51개)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이번 인권대회에서 인종말살책동에 대한 비난과 유엔의 무기금수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보스니아사태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이슬람국가들은 결국 미국과 영국 등의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폐막 하루전인 6월 24일, 재석 143표중 찬성 88표 반대 1표 기권 54표로 특별결의문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한다. 이 비서방측의 작은 승리는 탈냉전시기 미국 등 서방측의 인권외교의 한 실패를 상징한 것이자 그 영향력의 감소를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고등인권판무관제의 신설>

비엔나대회가 시작되기 전, 많은 인권단체들은 국제사면위가 공식 제안한 고등인권판무관제가 이번 회의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안기초위원회가 이 주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시작한 것은 6. 25일 새벽이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200여가지의 불일치점에 대한 사소한 타협을 찾는데 모든 일정을 소비한데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슬람국가들은 고등인권판무관이 서방의 영향력 아래서 서방의 인권정치에 다시 한번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즉, 유엔의 민주적 개편없이 함부로 유엔의 강화를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운 제도보다는 사무차장을 한 명 더 두어 인권관계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책임을 주자'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2] 한 것도 중요한 반대로 작용하였다. 유엔을 강화하는데 온근히 반대하는 강대국들도 이 의견에 우호적이었다. 미국이 소말리아파병 평화유지군의 독자지휘권을 최근 주장한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현재 흐트러진 국제질서에서 권한이 강화된 유엔보다는 강대국이 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느슨한 유엔이 더 구미에 맞았던 것이다.

유엔의 민주화라는 매우 어려운 주제와 연관된 이 논의는 시간상의 제한이라는 명분을 얻어 차기 유엔총회에 이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그 후 93년 12월 유엔총회는 고등인권판무관제 신설을 결의하고, 전 에콰도르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소씨를 고등인권판무관으로 선임하였다).

다. 본회의가 남긴 것들

높은 기대를 받으며 출발한 세계인권대회에 대하여 낙관한 사람들은 이 회의가 세계질서의 변동을 기념하리라는 희망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회의자체로는 결코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모임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잣대로 현재의 세계질서가 어떤 상태인가를 가늠케 하는 역할을 했다. 보스니아사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갈등, 심화되는 지구 남북간의 갈등과 아시아 대 서방의 갈등, 정부들의 무능력과 민간단체들의 선도적 역할 등은 현재 세계사의 여러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다-1 <공통 인식>

온갖 논쟁과 견해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엔나회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에 대한 공동인식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 유엔은 현재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활동을 중심으로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 유엔은 인권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하며, 각 회원국의 책임과 역할을 판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유엔은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2) 고등인권판무관제 등 국제사면위의 공식제안내용에 대해서는 「Facing Up to the Failures:...」, AI Index:IOR 41/16/92, amnesty international 참조.

3)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인권대회를 준비하는데 무능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가 1993. 6. 10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새로운 관료제, 고등직책 그리고 상설포럼에 관한 안은 융통성과 순풍이 필요한 때 단지 불만과 저항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고 말해 NGO들의 커다란 반감을 샀다. 갈리 사무총장의 이같은 의견은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암묵적인 의사와도 같다.

- 유엔인권센타가 앞으로 매년 각국 인권상황을 다룬 종합적인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해야 한다.

(2) 정부의 역할과 책임

- 회원국 정부는 인권제도의 개혁, 인권증진활동,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임해야 한다.
- 유엔개혁을 주장한 정부들은 자국내 인권증진에 대해 남달리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인권문제를 다른 정치적·경제적 문제와 연관시켜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개발과 민주주의가 인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해도 이는 각각 별도로 고찰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민간단체(비정부단체)의 역할

- 각국 및 지역차원 민간단체들은 서로의 협력을 증진하고 유엔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현재 정부들간의 견해차이와 이해관계의 불협화음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의 시기에 민간단체들이 인권문제를 전면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한다.
- 민간단체들은 인권 A, B 규약에 나타나 있는 인권의 이상적 목표를 아무 현실적 구애없이 적극 설파하는 역할을 가진다.

초기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러한 공동인식이 형성되면서, 비엔나회의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의 절충과 협상을 거쳐 공식 선언문인 「비엔나 선언과 행동 강령」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이 선언문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평가 (사실상 국제인권운동의 퇴보라는 평가)로부터 조용한 만족까지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리우환경회의에 대한 평가도 아직 요원하듯이 중요한 국제회의의 결과는 실행하는데에도 그렇고 평가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일이 걸린다. 단, 인권대회의 진행사항과 선언문의 내용만을 기초로 해서 볼 때, 회의 마지막 날인 6월 25일 밤 11시 55분경 폐회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다음과 같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남겼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다-2 <성과>

- 무엇보다도 일정하게 새로운 내용을 담은 비엔나선언을 채택하는데 결국 성공하였다.
- 인권보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각국 정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각국 혹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였다.
- 빈곤에 의한 인권침해를 강조하고 개발(발전)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 고등인권판무관제의 우선적 검토를 유엔 총회에 권고하였다.
- 민간단체들이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중대한 의의를 더한층 강조하였다.

그러나, 절충에 실패하여 답보되거나, 최소한의 진전도 보지 못한 실패의 측면도 적지 않다.

다-3 <답보>

4)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유엔세계인권대회 보고서」 참조.

- 최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난민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언급이 없다.
- 고등인권판무관제와 더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국제사법재판소 신설에 관한 합의에 실패하였다.
- 기타 위 성과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다-4 <실패>

- 유엔인권센타의 예산증대와 인원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실패하고 추상적 원칙만 합의하였다.
- 고등인권판무관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이를테면 권한, 예산, 활동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유엔총회로 이관하였다.
- 개발과 인권의 연관속에서 남북간의 빈부격차가 증대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이 불충분하게 언급되었다.
- 비엔나회의는 원주민의 10년을 선포하고 그 중요성을 공언했지만, 다른 한편 원주민들의 자치권에 반대하는 미주대륙 및 태평양지역의 국가들로 인해 비엔나선언에 원주민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문항을 삽입하는데 실패하였다.
- 문안기초위원회에 민간단체들이 배제되면서 문안기초작업이 구체적 상황과 인권철학에 의거하기 보다는 정부간의 정치적 협상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 소수층(인종, 종교집단 등)의 자결권이 기존국가의 주권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

비엔나 정부간 회의(본회의)만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정부들이 보여준 '국가이외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력, 준비부족 그리고 협소한 이해타산의 외교방식은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인권학자들은 현재의 국가가 세부적인 인권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탈냉전의 갈등사태를 다루기에는 너무 왜소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또, 근대를 거쳐 냉전시기에 완고한 형태로 경직화된 대다수 국민국가(nation-state)가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데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 서유럽의 외국인 배타주의의 확산과 세계 곳곳의 민족갈등은 그 징표라고 지적한다. 즉 현대세계의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필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논의는 앞으로의 국제질서의 담당자로서 「민족국가와 그 정부」가 갖는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촉발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무능력과 혼란, 그리고 G7회담이 최근 받고 있는 따가운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냉전이후의 세계질서를 추동하는데 기존의 정부중심 협의체계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일 것이다. 비엔나 인권대회는 이런 맥락에서 리우환경회의와 아울러, 지구의 환경과 인간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현존국가와 정부에만 맡길 수 없으며 그러므로 새롭고 대안적인 담당자들과 새로운 차원의 국제관계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연관되어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적 국제관계를 위해 비정부분야 혹은 소위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라. 비엔나선언과 한국정부의 책임

유엔의 신입회원국으로서 이 회의에 참여했던 한국정부는 모든 정부대표들의 결론인 「비엔나선언」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이 우리 인권상황과 관련된 내용에 무언가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식과 책임감이 문제가 된다. 즉,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의 천부적 권리로서 대한민국 영토내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비엔나 선언」 제2부 2절의 2). 그 책임감은 과거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국가보안법 등 악법의 폐지로부터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와 사회기관이 갖는 인권교육의 책임이다(제2부 20절, 제3부 4장). 위계질서와 연고의 문화가 뿌리깊고 특히 인간의 평등성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국민교육이 크게 모자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모든 차별의 종식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 국민교육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군대, 사법부, 검경찰, 교육자, 경제인,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교육될 수 있도록 관장해야 한다. 인권교육의 쇄신과 책임감의 반성없이 국제회의에서 '한국에는 더이상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과 같은 '한국식 인권의 국제적 확산'은 더이상 몇몇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민족적 위선으로 될 것이다.

정부의 뚜렷한 책임감과 사회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인권문제에 관한 정부와 비정부기관들 즉 민간단체들간의 협력방식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제2부 7절). 정부는 민간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과 협력 없이는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민간인권단체들간의 국제연대가 사실상 국제적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정부는 여러가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유보조치의 철회를 진행시켜야 하며, 최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일반 노동조합권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취업권과 건강권 등 인권보장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 비엔나선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유엔사무총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제3부 6장 2절). 끝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유엔 회원국인 한국정부의 의무와 진실성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높은 강도의 감독과 비판을 전개할 것이며, 인권과 관련된 외교활동이 상세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비엔나인권대회이후 한국인권운동의 대응

가. 비엔나회의의 공동평가

한국 인권단체들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비엔나회의 공동참가와 공동평가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비엔나인권대회가 끝난 직후 참가단체들은 공동으로 보고자료집을 낸 후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의 몇몇 중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5] (단 평가회가 엄격한 요건을 갖춰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잠정적 합의사항이다.)

- 조직적 공동활동의 성과

공대위(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와 같은 활동은 한국 인권운동상에서

5)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유엔세계인권대회 소식」 1-3호 참조.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대회 공대위 활동평가」 및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공대위 활동 평가」 참조.

뿐만 아니라 비교적 국제연대활동을 앞서서 해 왔던 노조운동이나 여성운동 교회운동 평화운동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소중한 공동활동이었고, 성과가 있다면 이는 모두 공대위의 조직적 공동활동에 돌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범은 앞으로의 국제연대활동에도 중요한 귀감을 남겼고 모든 연대활동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과 국제행사에 대해 좀처럼 이루어내기 힘든 내부합의를 거쳐 이 같은 국내 국외 공동활동을 해낸 인권단체들은 참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낸 것이다.

- 최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난민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언급이 없다.
- 고등인권판무관제와 더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국제사법재판소 신설에 관한 합의에 실패하였다.
- 기타 위 성과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다-4 <실패>

- 유엔인권센타의 예산증대와 인원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실패하고 추상적 원칙만 합의하였다.
- 고등인권판무관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이를테면 권한, 예산, 활동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유엔총회로 이관하였다.
- 개발과 인권의 연관속에서 남북간의 빈부격차가 증대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이 불충분하게 언급되었다.
- 비엔나회의는 원주민의 10년을 선포하고 그 중요성을 공언했지만, 다른 한편 원주민들의 자치권에 반대하는 미주대륙 및 태평양지역의 국가들로 인해 비엔나선언에 원주민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문항을 삽입하는데 실패하였다.
- 문안기초위원회에 민간단체들이 배제되면서 문안기초작업이 구체적 상황과 인권철학에 의거하기 보다는 정부간의 정치적 협상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 소수층(인종, 종교집단 등)의 자결권이 기존국가의 주권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

비엔나 정부간 회의(본회의)만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정부들이 보여준 '국가이외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력, 준비부족 그리고 협소한 이해타산의 외교방식은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인권학자들은 현재의 국가가 세부적인 인권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탈냉전의 갈등사태를 다루기에는 너무 왜소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또, 근대를 거쳐 냉전시기에 완고한 형태로 경직화된 대다수 국민국가(nation-state)가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데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 서유럽의 외국인 배타주의의 확산과 세계 곳곳의 민족갈등은 그 징표라고 지적한다. 즉 현대세계의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필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논의는 앞으로의 국제질서의 담당자로서 「민족국가와 그 정부」가 갖는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촉발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무능력과 혼란, 그리고 G7회담이 최근 받고 있는 따가운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냉전이후의 세계질서를 추동하는데 기존의 정부중심 협의체계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일 것이다. 비엔나 인권대회는 이런 맥락에서 리우환경회의와 아울러, 지구의 환경과 인간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현존국가와 정부에만 맡길 수 없으며

- 앞으로 중요한 국제연대활동은 국가간의 외교를 뛰어넘는 민간활동이어야 한다.
- 앞으로의 국제연대활동은 (민족)국가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보편지향적 운동이어야 한다.
- 앞으로의 국제연대활동은 탈냉전의 질서 즉 민주적 국제질서를 추구해야 한다. 즉, 보편적 대안(전략)을 모색하는 하나의 노력으로서 새로운 국제관계를 개척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근대 이후의 주도문명으로서 자본주의서구문명(경제, 정치, 종교, 생활문화의 총칭으로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뒤받침되어야 하다.

인」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이 우리 인권상황과 관련된 내용에 무언가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식과 책임감이 문제가 된다. 즉,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의 천부적 권리로서 대한민국 영토내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비엔나 선언」 제2부 2절의 2). 그 책임감은 과거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국가보안법 등 악법의 폐지로부터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와 사회기관이 갖는 인권교육의 책임이다(제2부 20절, 제3부 4장). 위계질서와 연고의 문화가 뿌리깊고 특히 인간의 평등성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국민교육이 크게 모자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모든 차별의 종식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 국민교육기관에서뿐만 아니라 군대, 사법부, 검경찰, 교육자, 경제인,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교육될 수 있도록 관장해야 한다. 인권교육의 해신과 책임감의 반성없이 국제회의에서 '한국에는 더이상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과 같은 '한국식 인권의 국제적 확산'은 더이상 몇몇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민족적 위선으로 될 것이다.

정부의 뚜렷한 책임감과 사회적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인권문제에 관한 정부와 비정부기관들 즉 민간단체들간의 협력방식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제2부 7절). 정부는 민간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과 협력 없이는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민간인권단체들간의 국제연대가 사실상 국제적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한국정부는 여러가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유보조치의 철회를 진행시켜야 하며, 최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일반 노동조합권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취업권과 건강권 등 인권보장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 비엔나선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유엔사무총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제3부 6장 2절). 끝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유엔 회원국인 한국정부의 의무와 진실성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높은 강도의 감독과 비판을 전개할 것이며, 인권과 관련된 외교활동이 상세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비엔나인권대회이후 한국인권운동의 대응

가. 비엔나회의의 공동평가

한국 인권단체들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비엔나회의 공동참가와 공동평가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비엔나인권대회가 끝난 직후 참가단체들은 공동으로 보고자료집을 낸 후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의 몇몇 중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단 평가회가 엄격한 요건을 갖춰

적, 개방적, 분산적 네트웍을 구성하며, ② 「인권, 민주화, 개발」에 관계된 모든 민간단체를 포괄하도록 노력하며, ③ 여기에 관심있는 전문가, 학자, 기타 포괄토록 노력하며, ④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연대체, 협의체, 기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엔나대회 이후 한국공대위는 동북아지역의 민간단체들간의 연락 및 조정의 책임을 맡아 왔고 또 그에 따라 위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일조해 왔다. 올해 2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인권단체회의에서는 아태지역 인권네트웍 준비과정을 점검한 후, 간단한 구조의 전체 아태지역연락체계를 조직화하기로 결의하였다. 나라별 소지역별 연락담당자들의 조직을 아태지역 「인권연락촉진팀」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공대위도 여기에 동북아 임시연락담당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 인권단체연락회의에도 참석하여 다른 지역과 다른 인권부문조직(여성, 아동 등) 사이의 협력방안과 범세계적 인권연락체계의 구성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아태지역의 「인권연락촉진팀」과 세계연락체제는 규모와 성격상 유엔 등 국제기구의 공식협의자격을 획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조직발전을 할 경우 새로운 국제조직으로서 발돋움하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 공대위는 1월31일-3월11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유엔 제50차 인권위원회에도 참관하여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른 국제단체들과 공동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정부의 발언과 외교활동을 일부 모니터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비엔나대회가 가져온 조용한 변화들이 많다. 공대위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일정한 개편을 거쳐 지속적인 대유엔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유엔 인권위 등에 한국의 국가보안법, 고문과 자의적 구금 등 형사절차상의 인권침해사실이 정식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과도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청산의 인권법적 개념인 '불처벌 Impunity'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남미 다음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며 자료와 분석 등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만의 상황을 넘어서 '탈냉전시대 국가안보 법제와 인권의 모순관계'에 대한 공동관심으로 여러 나라, 여러 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또 공대위는 이미 구성된 국제협력체제를 통해서 인권과 연관된 모든 국내 국제문제들에 대해서 입장개진과 연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같은 인권운동의 국내 국외의 변화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발전될 민간단체(사회)들간의 국제협력체계에 중요한 동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며, 그를 토대로 기존 국제기구에도 발언권을 높이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
: 그 7대 딜레마 (1)

이 세 경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빈 세계인권대회 등 최근에 몇몇 중요한 계기를 거치면서 약간의 이론적 도전의 계기가 있었으나, 여전히 인권운동의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질문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최근 현실이다. 한편 몇몇 국제회의의 경험과 유엔인권기구에 대한 제소 및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등의 국제적 인권운동이 전개되면서 국제인권규약 등 '보편적 규범과 법'에 대한 관심사가 날로 달라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국제인권법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법부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과, 보스니아사태에서와 같이 무력하기만 유엔의 현실 앞에서 유엔을 통해 성립되어온 국제인권규범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깊을 수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되었을 때,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 의해 인권은 엄격히 국내적 사안으로만 인정되었고 각국의 준수여부와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의 역할은 거의 논외로 취급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 당시 많은 나라들이 구속력을 가진 협약의 채택에 반대했기 때문에 유엔은 1953년 유엔이 아무런 국제인권협약의 제정에 관여할 뜻이 없다는 것을 공표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가 형식적으로나마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승인하고 또 국내법적 효력화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또 6대 인권규약(국제사회권규약, 국제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이 세계인권선언을 풍부히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 인권단체들도 방콕아태지역인권회의(1993년)와 빈 세계인권대회(1993년)에서 발표한 입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왔다. 김근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부당성에 대한 유엔 제소,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서 발표한 강력한 권고내용, 삼청교육 피해자의 유엔 제소,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민간단체의 공동보고서 작성활동 등은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점차 광범위하게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권규범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과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검토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 글은 인권용호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집중적인 논의의 촉발을 희망하는 바탕글이다.

이론적 빈곤에 따른 인권운동의 딜레마

탈냉전이 인권운동에 부여하는 변화요인은 무엇인가? WTO와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경제질서(이

른바 새로운 '라운드'들)에 인권운동이 대응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신세대의 탈정치현상 속에서 인권운동이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을 에워싼 인권공방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공세적 정책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인권의 언어로 가치규범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나라 안팎의 변화가 제기하는 문제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권운동 내부에서 이러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는 별로 없다. 때문에 사실상 인권운동상 접근하지 못하거나 자연스럽게 경시하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소수집단의 권리와 발전권, 환경권 등 집단적 권리의 범주는 뚜렷한 진보적 논의의 단초와 문명적 충돌이라고도 표현할 만한 쟁점을 담고 있다("Conceptual Problems in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s", Human Rights Quarterly 17, 1995). 그러나 우리 인권운동상에서 이를 논의한 경험은 없다. 리우환경회의(1991), 사회개발정상회의(1995), 세계여성회의(1995), 제2차국제정주권회의(1996)에는 한국의 (광의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했고 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의 주제별로 제기되는 상당한 양의 다양한 인권논쟁이 충분히 소개되거나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그 뿌리는 인권운동 안팎의 어려운 현실과 이론적 빈곤에 있다. 이론적 빈곤은 입장과 원칙상의 비일관성을 야기하며 이는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자들의 자기방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인권운동은 특정한 규범과 기준을 갖고 출발하고 또 그를 추구한다. 그리고 최근 다양한 국제인권규약과 규범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처럼 언급된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이 과연 보편적인가? 기독교 이외의 종교적 전통이나 비서구적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도 인권은 보편적인가? 한 사회와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논리적 모순은 없는가? 인권의 보편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보편적 합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합의의 보편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른바 기본권 이외에도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는가? 합의에 기초하지 않는 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의 내용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최근 발표된 국제적 인권선언에 과연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였는가? 개인의 권리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집중된 인권철학은 서구적이고 특수한 것이 아닌가?

이론적 빈곤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주어진 실천적 도전의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출발의 지점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이러한 취지로 관습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출발로서 현재의 인권운동이 처한 딜레마를 (1) 보편성의 딜레마 (2) 불가분성의 딜레마 (3) 경제와 인권의 딜레마 (4) 연대성의 딜레마 (5) 안보와 공익성의 딜레마 (6)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가주권의 딜레마 (7) 개인적 인권와 집단적 인권의 딜레마 (8) 남는 문제 등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정식화는 규정적이기보다는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 제안의 의미를 갖는다.

(1) 보편성의 딜레마 : 인권의 보편성과 적용의 상대성

인권규범의 해석과 적용에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요인들이 갖는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접근은 자칫 인권의 유보 및 보편성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재 인권운동상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The UN's Human Rights Record: From San Fransisco To Vienna and Beyond", Philip Alston,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인권에 대해 적용하는 국제인권규범은 쉽게 보편적 차원에서 언급되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문제를 말할 때는 체제의 특수성이 암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지적되고 공식적으로 비판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빈 인권선언에 나타난 애매한 합의에 대체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빈 선언은 그 내부에 치열한 논쟁의 절충과 회피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독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특히 빈 대회에 참가한 우리 인권단체들의 대표단은 대부분 중국 등 개도국 정부가 제기한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와 인권은 궁극적으로 주권국가 내부의 문제라는 주장을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한 것에 거의 무비판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검토되지 못했다.

인권의 보편성 문제는 실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또 국제정치역학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간단히 결론내리고 접어두기에는 곤란한 문제이다. 보편성의 딜레마는 다른 딜레마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보편적 인권규범과 관련해, 유엔에 감독기관을 둔 인권의 양대 국제인권규약을 각각 120국 이상이 비준한 사실 자체는 규범적 측면에서의 보편성 획득에 성공했다고 판단내릴 수 있다. 빈 인권선언의 39개 문항중에서 4개의 문항(1, 5, 32, 37문단)이 보편성을 강조하는데 할애된 점에서 형식적인 합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Christian M. Cerna,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실제 적용상에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다. 이슬람국가들처럼 개인적 영역에서의 생활규범이 종교적·관습적으로 강하게 규정된 사회에서 국제인권규약은 보편성은 확인하기기 힘들다. 그러나 이슬람국가 또는 특정 사회에서의 보편성 상실을 일단 인정한 이후에 보편성 원칙은 더욱 더 강조하기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보편성은 허상인가 또는 서구적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보편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부 불가침(non-derogable)의 기본 인권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기본 인권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인권범주를 기본 인권에서 소외시켜 결국 보편성의 부정을 허용할 위험으로 이어진다. 빈 인권선언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과연 인권은 보편적이면서도 지역적인가라고 묻는다면 이는 명백한 절충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즉 요약하면 '현재 국제인권규범은 서구적인 것이며 서구적인 가치규범을 확산시키려고 할 때 반드시 주권침해로 연결된다'는 주장(Por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Region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sia, in Africa, in the Americas and in Europe, Friedrich-Naumann-Stiftung, 1993, Strasburg.)도 보편성문제를 국가주권과 연결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것은 빈 세계인권대회의 핵심 논쟁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또다른 기원으로 좌파의 전통적 인권론이 있다. "자유의 경제적 조건이 충족된 때에야 자유는 부르조아적 관용 이상의 진정한 자유가 된다"(영국 노동당의 해롤드 라스키, The Review,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No.50, 1993에서 재인용). 프랑스혁명 이후 반복된 "빵과 자유" 사이의 갈등이다. '빵'은 국제규범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파적 반론은 경제적·사회적 인권에 대한 형식적인 국제적 합의가 진행되면서(대표적으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잠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의 문제는 지구 남북갈등 속에서 개발과 경제적 권리의 언어로 부활한다. 이를테면 아시아의 한 민간단체가 펴낸 진보적 인권교재에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인권패러다임이 갖는 문제로서 사회권에 대한 경시와 국가중심의 인권침해 규정을 들고 있다. 즉 경제적·사회적 인권에 대한 불인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강자에 의한 인권침해의 불인정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Initiating Human Right Education at the Grassroots, 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 1993). 즉, 인권의 보편성은 사회권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성 논의에는 규범상의 논의와 적용상의 논의에서 충돌이 있으며 그 충돌은 인권의 종합성과 불가분성 사이의 논란으로 이어진다.

(2) 불가분성의 딜레마 : 시민·정치적 인권범주와 경제·사회· 문화적 인권범주의 동등성과 불평등성

원래 종합적이어야 할 인간의 권리가 서구사회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두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때문에 이 두 범주의 권리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발전경로를 밟아왔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국내법의 발전을 반영하여 발전한 것과는 달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대부분의 국내법이 국제법에 못미친다. 또 사람들의 관심도 적다. 때문에 대다수의 국내외 인권운동단체들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민·정치적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사회적 인권을 동등하게 위치지우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Philip Alston, 위 자료). 사회권의 인권적 위상을 부정하고 시민·정치적 권리를 인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서방의 자유주의적인 인권운자들의 역할이었지만, 우리의 인권운동 현실에서는 독재국가의 횡포 때문에 오히려 자유주의와는 반대의 각도에서 시민적·정치적 인권이 실천적으로 상위를 점한다. 그 결과로 사회적 인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계층의 특수한 문제로, 예를 들면 도시빈민의 주거문제, 여성의 복지문제, 노인의 연금문제, 장애인의 복지문제 등으로 접근된다.

불가분성의 딜레마는 경제적·사회적 인권에 대한 비민주적 정부의 입장을 비판할 때에도 나타난다.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기현상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발전을 인권보장으로 접근하려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미국과 77그룹은 공교롭게도 함께 반대했다. 경제·사회적 인권을 서구적인 기준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인권의 일종의 종합으로서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은 77그룹에 반대해서 공동의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각국 정부에 대해서 설득작업을 벌이던 사회권단체들에게는 협력대상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권의 불가분성에 대한 파탄이다. 즉 현실에서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이기도 하다. 이럴때 각 그룹 정부의 입장을 일관성있게 비판하는 관점은 무엇인가, 인권의 불가분성은 추상적 원칙일 뿐 현실적으로는 공허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더 가까운 현실에서도 불가분성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3세계국가 중에서 매우 활발한 대유엔활동을 폈던 필리핀의 전국인권단체협의회(PAHRA)도 그 구성단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중심활동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권리는 지역단체와 개발단체(development NGOs)로 자연스럽게 분담되었다. 이는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불가분성에 대한 원칙적 인정에도 불구하고 3세계의 현실에서 인권운동은 유엔의 양대인권규약의 분리만큼 분리되어 있고 또 그만큼 개인적 인권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운동의 경제·사회적 관심사는 인권적 접근이라기보다 체제론적이고 그러므로 집단적 권리를 주로 다룬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두고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서구 인권단체와 3세계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관계가 미친 영향이라고도 평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깊이있는 이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시 한번 '빵과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 경제전쟁시대의 딜레마 : 인권운동과 경제의 분리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제도상 또 인권운동상 소홀히 취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경제 및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여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든 재원조달의 우선권 논란, 외채 또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 국제금융기관 등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사회권에 대한 경시가 함께 작용한다. 아울러 '인권운동'이 시민정치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문제를 직접 논의한 바가 거의

없으며, 최근까지 '권리의 연대'(특정 권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형 연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사회권 분야의 사회운동은 인권운동과 별개인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사회권에 대한 논쟁의 핵심에는 재원의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권규약 제2조는 규약가입국의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모순된 두 개념의 절충적 총돌일 뿐이다. "최대한"이라는 것은 이상적 목표를 의미하지만 "가용"이라는 표현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 국가는 항상 후자를 방패로 전자를 막아낸다("Measuring Stat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Devote the 'Maximum Available Resources' to Realiz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최대한의 가용재원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재원의 동원에 관한 지표가 필요하지만 인권법의 전문가들이나 인권단체에서 이러한 지표를 개발한 적은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권관련 단체들의 연대활동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지난 5월 19일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낸 첫 권고문에도 "한국정부가 사용가능한 재원을 염두에 둘 때 ○○○이 부족하다"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가능한 재원'에 대한 추상적, 주관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권규약상의 개념적 절충성은 사회권에 대한 엄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재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허용은 국가가 안보 및 공익을 이유로 한 재원왜곡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첫째 재원이라는 무엇인가 (재원이란 단순히 국가예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권의 보호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 정보자원, 자연자원, 재정자원 등), 동원할 재원의 규모를 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정부가 사회권보장을 위해서 재원을 동원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이상 위 자료). 즉 사회적 인권운동에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즉 피해자들의 존재와 아울러 재원조달에 대한 대안적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용한 최대의 재원과 재원왜곡에 대한 인권운동의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것은 인권과 경제 및 기타 연관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전통을 세우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이념을 대신할 '세계화'현상을 염두에 둘 때 인권에 연관된 경제적 분석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단, 재원과 관련된 경제적 검토는 이미 교육개혁, 사회복지개혁 등 사회권분야에서 이미 분산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즉 사회권 범주에 기반을 둔 종합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는 재원을 동원하는 경제적, 사회적 체제가 다른 사회의 인권보장에 대해 비교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 또 그래야만 특정 정부의 정책을 지표를 갖고 합리적으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와 인권의 연관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른바 개발-인권 연계정책(conditionality)의 문제이다. 유럽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규제 움직임, 이른바 블루라운드의 무역-노동권 연계정책, 경제개발지원과 인권 및 환경권의 연계정책은 그 내용상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특히 선진국 대자본의 기술적 경제적 우위와 지배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연계정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적 적용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 논쟁과 선진국의 경제력에 의한 약소국의 주권침해논쟁을 다시 유발하고 있다. 인권의 경제적 연관성을 국제경제구조에 비추어 고려할 때 '주권을 넘어선 보편적 인권'을 쉽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밖에 선진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가 현재의 국제경제질서 및 선진국의 경제적 압력을 중요한 이유로 해서 온전한 개발정책을 취하기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사회권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기 쉬운 처지에 있는 현실, 시장개방, 실업 및 지적소유권 독점 등 경제구조재조정에 따른 대량의 경제적 인권 침해의 현실은 과연 국제적 경제불평등과 인권보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쪽이 우선인가를 재고하게 한다.

(4) 연대성의 딜레마:
인권 네트워크운동의 확장성과 그 제한

이상의 딜레마는 과거와 현재의 불일치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즉 인권운동의 대중화와 확산의 계기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인권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시민단체들간의 '권리의 연대'가 다양하게 결성되고 있다. 빈 세계인권대회 이후 창립된 인권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회개발정상회의 민간포럼, 한국정부에 대한 강력한 권고안을 이끌어낸 사회권연대모임,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복지는 곧 인권'이라는 문제제기, 아동권조약에 관련된 아동권단체 연대모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준비하는 모임, 외국인노동자 인권 공대위, 해외진출기업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모임, 주한미군 인권침해 공대위, 환경운동의 환경권 소송운동 등 그야말로 분야별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네트워크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연대모임은 아직 인권운동이라는 하나의 대중적 행동양식으로 정식화되고 있지 않다. 인권네트워크운동의 현실적 확대와 범주상의 불일치는 인권운동이 취해야 할 연대성의 원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야기된 딜레마 중의 하나이다. '인권운동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일부 제한된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권단체들의 엄연한 현실 앞에서, 노조와 여성단체, 환경단체도 실은 모두 인권단체라고 규정하기에는 우리의 인권운동 및 인권단체에 대한 범주설정이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

포괄성 대신에 개방적 연대성을 축으로 범주설정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인권-민주주의-개발이라는 3위1체의 문제의식이 일반화됨으로 인해서 인권과 다른 범주 사이의 연대성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 원칙이 서있는 상태라고 보인다. 이를테면 사회개발정상회의나 인구회의, 정주권회의 등 거의 모든 국제모임에서 인권문제가 하나의 필수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권단체들을 포함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처방식은 독립적 비연관적 대응이 주류이다. 가장 최근의 예로서 핵확산금지협정(NPT) 기한연장회의에 참석한 평화운동단체들은 인권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해서 작성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살펴보면, 인간의 고유한 생명권은 심지어 국가적 공공적 위기상태에서조차 침해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반핵의 인권적 기초로 인용된다. 나아가 유엔인권이사회도 "핵무기의 설계, 실험, 제조, 소유와 배치는 오늘날 인류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에 속한다"라고 선언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1984년 11월, UN Doc. A/40/40).

최근 한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외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실상의 인권활동 속에서 인권적 담론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쟁점을 뽑아내지 못한 것은 이론적 빈곤을 배경으로 한 조정과 연대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인권네트워크운동 사이에는 일정한 철학적 기반과 연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권리의 연대' 방식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운동의 특징을 개방성과 네트워크형 조정력(coordination)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 특징을 인권운동 속에 수용하는 노력과 조직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조정력에는 이론적 풍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권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모임에도 앞으로 큰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상호 긴밀히 연관된 안보와 공익성의 딜레마,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가주권의 딜레마, 개인적 인권와 집단적 인권의 딜레마, 남는 문제, 딜레마 해결을 위한 제안 등이 있으나 지면사정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